

의안번호	2214761
의 퇴 인	윤종균의원
회 답 일	2026. 4. 9.
추 계 번호	25B661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함(제2항) 1. <u>25세</u> 미만인 사람 2. <u>25세</u>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 (현행)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를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의무규정
2	안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 상향(안 제2조제2항)

- 현행법¹⁾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지급인원 수	263	276	294	318	342
총 지급액	3,294	3,685	4,096	4,538	4,97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현행법²⁾은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는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9세 미만 자녀 및 손자·손녀는 2025년말 기준 1명임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2) 제2조(정의)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 개정안은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25세 미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를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추가되는 수급권자의 수 및 수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향후 추가되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의 연령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며, 유족급여 수급액은 수급권자별로 상이하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³⁾은 유족급여를 받는 유족의 순위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족 중 자녀와 손자·손녀가 연령 기준에 도달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후순위인 유족에게 수급권이 승계됨

□ 재직기간의 합산(안 제34조제2항)

- 현행법⁴⁾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별정우체국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다시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종전의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별정우체국연금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되면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연금가입기간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금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수급자 수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25년말 기준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수는 3,224명, 수급자 수는 2,793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는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중 직역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표 2]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수급자·급여지급액 현황(최근 5년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가입자 수	수급자 수	급여지급액
2021년도	3,336	2,321	52,670
2022년도	3,319	2,447	58,276
2023년도	3,302	2,576	65,901
2024년도	3,258	2,677	69,986
2025년도	3,224	2,793	74,692

* 급여지급액은 연금지급액만 반영, '25년 급여지급액은 가결산 수치로 결산 이후 변동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연계 신청자 수는 1명, 수급자 수는 10명임

[표 3] 별정우체국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현황(최근 5년간)

(단위: 명)

구분	신청자 수	수급자 수
2021년도	6	10
2022년도	1	10
2023년도	—	10
2024년도	—	10
2025년도	1	10

주: 신청자 수는 해당연도 신청자 수이고, 수급자 수는 연도말 기준 실 수급자 수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